



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안내

안녕하십니까? 늘시원한위대항병원 고객님
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DGB대구은행을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귀사의 확정급여형(DB) 2021-12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안내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』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(퇴직연금 사업자)은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대하여 결산일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결과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01 퇴직연금 가입정보

- 기업명 **늘시원한위대항병원**
- 사업자번호 **504-90-56555**
- 제도 **확정급여형(DB)**
- 퇴직연금계좌번호 **575102*******
- 가입일자 **2020-11-04**
- 안내일자 **2022-06-13**

02 재정검증 결과 안내 [평가일자 : 2021-12-31 기준] (단위 : 원)

2.1 일반현황

제도 설정일	납입 주기	법정최소적립비율			결산 연월	가입 자수	30일분 평균임금합계
		설정 전 ¹⁾	설정 후 ²⁾	전체 ³⁾			
2020-11-04	연납	40	90	50.7	2021-12	24	50,010,000

- 1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,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(연차)에 적립해야 합니다.
- 2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.
- 3)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과 설정 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예상액(이하 “기준책임준비금”이라 한다)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.

$$\text{산출식} = \frac{[(\text{평균 과거근로기간} \times \text{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}) + (\text{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} \times \text{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 (60, 70, 80 중 어느 하나)})]}{\text{가입기간 전체}}$$

2.2 납입현황 [확인기준일 : 2021-12-31] (단위 : 원)

부담금 산정액	부담금 납입액	차액 ⁴⁾
261,504,911	0	261,504,911

- 4) 해당 기간에 적합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액과 해당 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또는 초과액을 차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.

2.3 기초율⁵⁾ 현황

(단위 : %)

예상이율	예상임금상승률	예상퇴직률	예상사망율
1.75%	표준승급율	표준퇴직율	표준사망율

- 5) 기초율은 예정이율, 예정임금상승률, 예정퇴직률, 예정사망률을 말하며,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.) 제3조에 따른 기준 및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.

2.4 검증 결과

(단위 : 원)

최소적립금 산출		적립금 평가액 산출	
계속기준 금액 ⁶⁾	317,973,146	원리금보장 ⁹⁾ 평가액	68,345,346
비계속기준 금액 ⁷⁾	288,949,974	실적배당 ¹⁰⁾ 평가액	0
최소적립금 ⁸⁾	161,212,385	평가적립금합계 ¹¹⁾	68,345,346

검증결과 ¹²⁾	적립부족 ^{II}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- 6) 법 제1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. (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산정).
- 7) 법 제16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(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의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, 가입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).
- 8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(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)에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최소적립비율 (일반현황의 전체 법정 최소적립비율 값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9)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평가금액입니다.
- 10) 법 제 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평가된 금액입니다. 다만, 시행규칙 제6조제1호 후단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.

12개월간의 시가평균에 따른 평가금액	사업연도 말 시가에 따른 금액	최종평가금액
0	0	0

- 11)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의 평가액과 실적배당 운용방식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.
- 12) 최소적립금과 평가적립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.

2.5 조치사항

결과구분	적립부족 ^{II}
조치사항	귀하의 부족금액은 84,806,419원 입니다. ○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 대상임 -재정안정화계획서는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, 납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○ 동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와 당 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

	회서를 통보하여야 하며,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하여야 함
참고 12)	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,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.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시까지 사외(퇴직연금사업자)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

·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추후 상세 서면으로 통보 될 예정입니다.

안내사항

- 본 메일은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검증 결과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.
- 재정검증 결과와 관련 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, 아래의 문의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.
- 재정검증 결과 법정최소 적립금의 95%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사업년도에 추가부담금 납부 등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, 상세 안내는 추후 서면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.

더 가까이, 더 큰 혜택 DGB금융그룹
 Come closer, Graet benefit. DGB Financial Group

2022년 06월 13일
 신암동지점 (TEL:053-943-6101)

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송기준일 현재(2022.06.13) 기준으로 DGB대구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정보에 따라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신 고객님의게 발송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.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[수신거부](#)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| 사업자등록번호 502-81-07740 | Tel 1566-5050 | 1588-5050
 COPYRIGHT DAEGU BANK. ALL RIGHTS RESERVED.

